

의안번호	제781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4일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1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4일

발 의 자 : 박진희 · 이정범 · 유상용

김성대 · 김정일 · 박병천

박봉순 의원

1. 제안이유

- 도내 특수학교에 저상버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라.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마.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바. 특수학교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첨부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재정복지과, 창의특수교육과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저상버스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학교를 말한다.
2. “저상버스”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의 버스를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특수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저상버스 도입 등) ① 교육감은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도로 및 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 · 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9호, 2019. 12.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 표준모델”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이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구조의 버스로써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를 말한다. 다만, 2층 저상버스의 경우 저상면의 넓이가 1층 차실 바닥의 35% 이상인 버스를 말한다.
2. “저상면”이란 버스에 승객이 승차할 때 최초 밟게 되는 버스의 바닥을 말한다.
3. “경사판(Sliding Ramp)”이란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버스과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발판을 말한다.
4.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란 경사판의 경사각도를 낮게 하기 위해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장치를 말한다.

5. “통로“란 승객이 뒷부분좌석으로 착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공간을 말하며, “뒷부분통로면“이란 차량의 중간문 이후부터 가장 뒤쪽 좌석까지 이동하는 공간을 말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시행 2024. 5. 17.] [충청북도조례 제5119호, 2024. 5. 17., 타법개정]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충청북도 내 제5조에 따른 학교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
4. 통학 및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촌학교
2.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학교 통합 및 학교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공립유치원 통학여건 개선 및 학부모 선택권 확대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구입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구입 소요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5조(저상버스 도입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통학차량을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 연도별 저상버스 구입비에 물가 상승률 5% 반영

나. 추계 결과: 6,334,583,676원

- 저상버스 구입비: 6,074,583,676원
 - 2025년: 418,233,200원 × 1대 = 418,233,200원
 - 2026년: 439,144,860원 × 4대 = 1,756,579,440원
 - 2027년: 461,102,103원 × 2대 = 922,204,206원
 - 2028년: 484,157,208원 × 3대 = 1,452,471,624원
 - 2029년: 508,365,069원 × 3대 = 1,525,095,206원
- 전기차 충전기시설: 10,000,000원 × 13개 = 130,000,000원
- 구조변경: 10,000,000원 × 13대 = 13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438,233	1,836,579	962,204	1,512,472	1,585,095	6,334,583
학생 통학 지원		438,233	1,836,579	962,204	1,512,472	1,585,095	6,334,583
재원 조달		438,233	1,836,579	962,204	1,512,472	1,585,095	6,334,583
의존 재원	소 계	438,233	1,836,579	962,204	1,512,472	1,585,095	6,334,583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438,233	1,836,579	962,204	1,512,472	1,585,095	6,334,583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